

한–미 FTA 화학공업과 연관공업의 생산품에 관한 특례 규칙

품목별 원산지기준 제6부 해설(I)

오수교 전문위원 국제원산지정보원

시작하면서

수출입기업이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협정에서 정한 관련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미 FTA협정문의 부속서 6–가의 품목별원산지기준 HS 품목분류표 제6부(화학공업과 연관공업의 생산품)에 관한 특례규칙과 같은 일부 규정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대표적 규칙이다. 그러나 이 규칙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에 본고에서 규칙1을 해설하고 다음 호에는 규칙2부터 규칙7까지 소개한다.

한–미 FTA 협정에서 화학제품인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로 구성된 제6부에 속한 상품의 품목별원산지기준은 대부분 호의 변경을 기준(CTH)으로 하고, 일부는 소호 변경기준(CTSH)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호나 소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품목별원산지기준 제6부 주1”에서 정한 것과 같이 규칙1부터 규칙7까지 중에서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제6부의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예외적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을 별도로 둔 이유는 제6부에 분류되는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비록 호나 소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규칙을 충족할 경우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에 변화가 일어나거나 특수한 공정에 해당되어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규칙1부터 규칙7까지의 규칙은 화학에 관하여 전문적인 사항에 속할 뿐만 아니라 해석과 사례가 제시된 바 없어 수출입기업이 이 규칙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 규칙의 이해를 돋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HS 품목분류표와 HS 해설서에 근거하여 이 규칙들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품목별원산지 기준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 공업의 생산품의 제1규칙은?

규칙 1 화학반응 원산지(Chemical Reaction Origin)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서 화학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제3823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한다)은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

〈주〉

제6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문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문자 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문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문자가 되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사항들은 원산지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 (2)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이 규칙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화학반응은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한다. 첫째, 문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문자 내 결합 생성되어야 한다. 다음 [보기1]의 화학반응은, 염화나트륨(NaCl)의 문자 내 결합은 나트륨이온(Na^+)과 염소이온(Cl^-), 황산(H_2SO_4)은 수소이온(H_2^+)과 염산이온(SO_4^{2-})으로 문자 내 결합이 깨어진 다음에 수소이온(H_2^+)과 염소이온(Cl^-)이 결합하여 새로운 염산(HCl)이 생성 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화학반응을 이온결합이라 하고, 화학반응의 종류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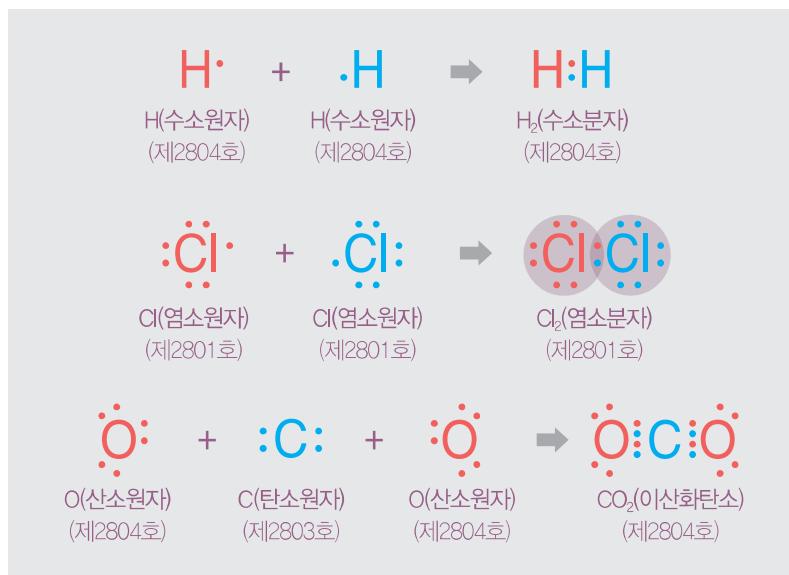
[보기1] 염산(제2806호)의 화학반응



두 번째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이어야 한다.

아래 [보기2]에서는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을 나타낸 것으로 이를 공유결합이라 한다.

[보기2] 공유결합에 의한 화학반응



즉, 화학반응에 사용된 물질과 화학반응의 결과로 생성된 물질의 호가 다른 경우 [보기1]도 있고, 또는 호가 같은 경우[보기2]도 있다. 전자와 같이 호가 다른 경우에는 품목별기준을 적용하면 되므로 이 규칙1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고,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1의 화학반응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28류(무기화합물)은 같은 원자끼리의 공유결합과 같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학반응을 거치면 대부분 호의 변경이 발생한다. 그러나 제29류(유기화학품)은 화학반응을 통하여 얻어지는 염과 각종 유도체는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구분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염(salt)

염이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는 이온성의 물질을 말한다. 염은 주로 중성을 띠는 물질이 많으나, 산(산성염)이나 염기(염기성염)를 띠는 화합물도 있다.

참고적으로 제28류의 염은 아래 [보기3]과 같이 화학반응의 결과로 호의 변경이 일어나므로 이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기3] 염소산칼륨(염)의 화학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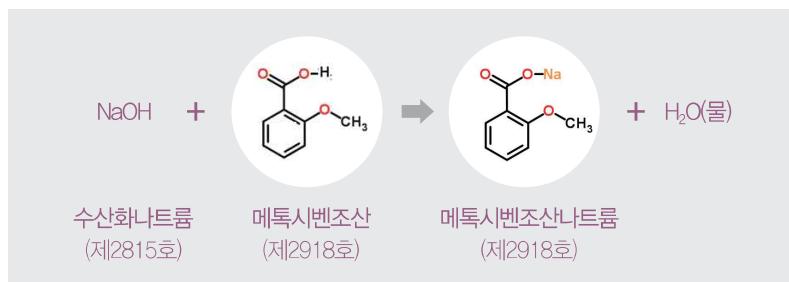


그러나 제29류에서는 화학반응을 통하여 염을 얻었더라고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기4]부터 [보기6]까지의 사례와 같이 화학반응으로 염을 생성하더라도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언하면 초산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화학반응을 시키면 초산나트륨(초산의 염)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초산나트륨은 초산과 같은 호인 제2915호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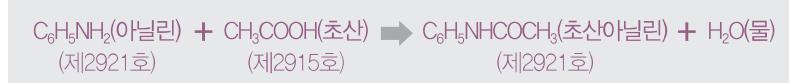
[보기4] 초산나트륨(초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반응으로 생성된 염)



[보기5] 메톡시벤조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과 메톡시벤조산의 반응으로 생성된 염)



[보기6] 초산아닐린(아닐린과 초산의 반응으로 생성된 염)



따라서 [보기4]부터 [보기6]까지의 사례와 같이 호의 변경이 없더라도 화학 반응의 결과 염이 생성된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이 된다.¹⁾

그 밖의 유도체(derivative)

유도체란 유기 화합물의 어미화합물(parent compound)에 작용기의 도입 · 산화 · 환원 · 원자의 치환 등의 반응으로 어미화합물의 구조와 성질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화된 화합물을 말한다. 즉, 분자구조 가운데 일부가 변화하여 생긴 화합물로 어미화합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한 것이어야 한다. 제29류에서 유도체의 종류에는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SO₃H), 니트로화유도체(-NO₂), 니트로소화유도체(-NO), 에테르유도체, 에스테르유도체 등이 있다.

유도체의 경우에도 호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진다. 우선 호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벤젠(C₆H₆)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 유도체가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1) HS 품목분류표 제29류(유기화학품) 주 제5호다목에서 규정한 염의 분류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29류에서 이와 같은 특례 규칙을 정한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있다.

[보기7] 벤젠과 벤젠의 유도체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니트로소화유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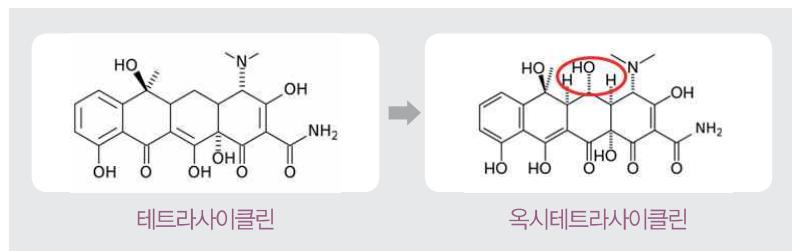
그러나, 초산에서 초산에틸에스테르의 유도체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기7] 초산의 에스테르유도체인 초산에틸(초산에틸에스테르)의 생성



또한, 제2941호의 항생제의 일종인 테트라사이클린과 그 유도체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은 모두 제2941호(소호도 제2941.30호로 동일하다)에 분류되므로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기8] 항생제의 유도체(테트라사이클린에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의 생성



[보기7]과 [보기8]의 사례와 같이 화학반응에 따라 각종 유도체를 생성한 경우에는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규칙1을 적용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염이나 그 밖의 유도체를 생성하는 공정을 화학반응이라 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문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문자 내 결합 생성되었거나 문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물질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 세 종류

그러나 이 규칙1에서는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 다음의 세 종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①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이 예외적 규칙은 한-미 FTA협정의 부속서 6-가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1부 일반주해 1-사항 “제1류 내지 제40류에 대하여,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물 또는 다른 물질로 단순히 희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규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제1부의 일반주해는 제1류 내지 제40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 예외적 규칙은 제28류 내지 제38류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규칙의 성격을 살펴보면 우선 물이나 다른 용제에 용해하는 것은 화학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용해로 인하여 세번변경이 발생하거나, 상품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정하여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이 규칙을 이해하려면 우선 HS 품목분류표 제28류와 제29류의 관련 주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제28류 주 제1호에 따르면 제28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과 이를 물에 용해하거나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나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경우 것은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제29류 주 제1호에서는 위의 규정보다는 좀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제29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단, 바목 · 사목 · 아목은 이 규칙과 관련이 없어 기재를 생략한다)

-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나. 같은 유기화합물의 둘 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포화나 불포화의 비환식 탄화수소에서는 입체 이성체(立體 異性體) 외의 이성체의 혼합물(제27류)은 제외한다]
- 다. 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의 물품, 제2940호의 당에테르 · 당아세탈 · 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이나 제2941호의 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라. 가목 · 나목 · 다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 마. 가목 · 나목 · 다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 HS 품목분류표 주 규정의 의미는 제28류와 제29류의 원소나 화합물은 물이나 용제(용매)에 용해하더라도 해당 주의 각목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래의 원소나 화합물과 같은 호에 분류함에 따라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HS 품목분류표 해당 주의 각목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는 한-미 FTA협정의 일반주해에서 정한 규칙인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물 또는 다른 물질로 단순히 희석한다”이라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물에 용해한 것

다음 [보기9]부터 [보기11]까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28류와 제29류 뿐만 아니라 제30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도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으면, 물이나 용제(용매)로 용해했더라도 세번의 변경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보기9] 인산수용액의 제조

인산(제2809호)은 조해성(고체가 대기 속에서 습기를 빨아들여 녹는 성질)이 있는 프리즘형 결정이므로 고체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곤란하여 보통 65%나 90%의 수용액으로 보존

[보기10] 화학조제품의 용해

페인트와 잉크(제32류)나 향수(제3303호)를 물이나 다른 용제(용매)로 용해

[보기11] 시약으로 용해

분석이나 진단 또는 화학실험용 시약에 사용하기 위하여 몰 농도(용액)²⁾ · 노르말 농도(용액) · 모랄 농도(용액)나 퍼센트(%) 농도(용액)와 같은 표준용액으로 만든 용해

다만, 화학실험용 시약은 이 규칙1에 의해서는 원산지상품이 될 수 없으나, 규칙5에서 규정한 표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2) 물외에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용제(solvent)란 용액을 만들 때에 용질을 녹이는 액체를 말하며, 용매라고도 한다. 그 종류에는 메틸알코올이나 에틸알코올 · 벤젠 · 아세톤 등 많은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용제는 휘발성을 지니고 있다. 물로 용해한 경우에는 용도나 특성의 변화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용제로 용해한 경우에는 제28류와 제29류의 관련 주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특정한 용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호의 변경이 발생하게 된다.

2) 몰 농도(용액)란 용액 1리터 속에 들어 있는 용질의 몰수를 말하는데, 1몰은 용질의 분자량에 그 램을 붙인 값이다. 따라서 1리터의 물에 분자량이 40인 수산화나트륨(NaOH) 40그램을 녹이면 수산화나트륨 1몰 농도(용액)가 된다.

제28류와 제29류 뿐만 아니라 제30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도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비누(제3401호)를 시크로헥사놀과 같은 유기용제에 용해하거나 분산시킨 것은 조제계면활성제(제3402호)로 분류하여, 호의 변경이 발생하므로 품목별기준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

2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용질⁽³⁾을 녹이기 위하여 사용한 용제를 제거하는 이유는 불필요하게 잔존하는 것을 없애거나 또는 용질의 함유량을 높이기 위하여 목적(농축)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용제의 제거공정은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원산지상품으로도 취급되지 않는다.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결정수란 결정물질 속에 일정비율로 함유하는 물(H_2O)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결정물질에 물이 결합된 것을 수화물(水化物)이라 하고 물이 없으면 무수물(無水物)이라 하는데, 제28류나 제29류의 무수물이 수화물로 또는 수화물이 무수물로 바뀌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호에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열을 가하거나 흡착제를 사용하여 결정수를 제거하게 된다. 예를 들면 브롬화나트륨(NaBr, 제2827호)은 섭씨 51도 이상에서 결정화되어 불안전한 무수물 상태이나 그 이하의 온도에서 수화물((NaBr · 2H₂O)로 소큰 입방체의 결정이 된다. 이와 같이 결정수의 첨가나 제거는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아래 표1은 결정물질의 무수물과 수화물을 나타낸 것이다. 염화칼슘과 같이 어떤 물질은 조해성이 있어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을 스스로 흡수하여 스스로 수화물로 되는 경우도 있다.

3) 용질이란 용매에 녹아 용액을 만드는 물질을 의미하며, 앞의 보기9과 보기10에서 언급한 인산 및 페인트와 잉크나 향수를 용질이라 할 수 있다.

■ [표1] 결정물질의 무수물과 수화물

번호	품목번호	결정물질 명칭	화학식(무수물)	화학식(수화물)
1	제2830호	황화나트륨	Na ₂ S	Na ₂ S · 9H ₂ O
2	제2830호	황산이나트륨	Na ₂ SO ₄	Na ₂ SO ₄ · 10H ₂ O
3	제2833호	황산니켈	NiSO ₄	NiSO ₄ · 7H ₂ O, NiSO ₄ · 6H ₂ O
4	제2833호	황산제이철	FeSO ₄	FeSO ₄ · 7H ₂ O

이 규칙을 적용할 때 유념할 사항은 아래 보기12와 같이 문자 내에 존재하는 물을 제거하는 것은 이 예외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정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에틸알코올이나 이소프로필알코올에서 물을 제거하여 에틸렌이나 아세톤을 얻는 것과 같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호의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규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지만, 설령 호의 발생이 변경하지 않더라도 화학반응에 해당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

[보기12] 에틸렌과 아세톤의 제조

예 :



예 :



4) 에틸렌은 용적기준으로 95 % 이상이면 제2901호에 그 미만이면 제2711호로 분류된다.